

충청북도 NGO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한 철 우

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3년 8월26일 심기보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2013년 8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개정이유

- 최근 논의가 활발한 협동조합,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분야를 NGO센터의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,
- NGO의 사업에 사회적 경제 영역인 사회적 기업, 협동조합의 인큐베이팅 기능을 추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NGO의 정의 확대 (공익 추구→사회적 목적 추구)
- NGO의 기능 확대 (사회적 기업과 마을공동체 육성 추가)

4. 검토의견

☐ 충청북도 NGO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,

- NGO의 정의에 “사회성”을 강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의 시민민주주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
- 경제민주화와 실업난 해소의 대안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NGO센터의 기능에 포함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